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서-

2020. 7



국 토 교 통 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계획의 목적

-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의 총 9개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의 유량, 수질·생태 및 이용현황 등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 및 친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근거

-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별표 2] 관련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자.하천의 이용 및 개발	3)「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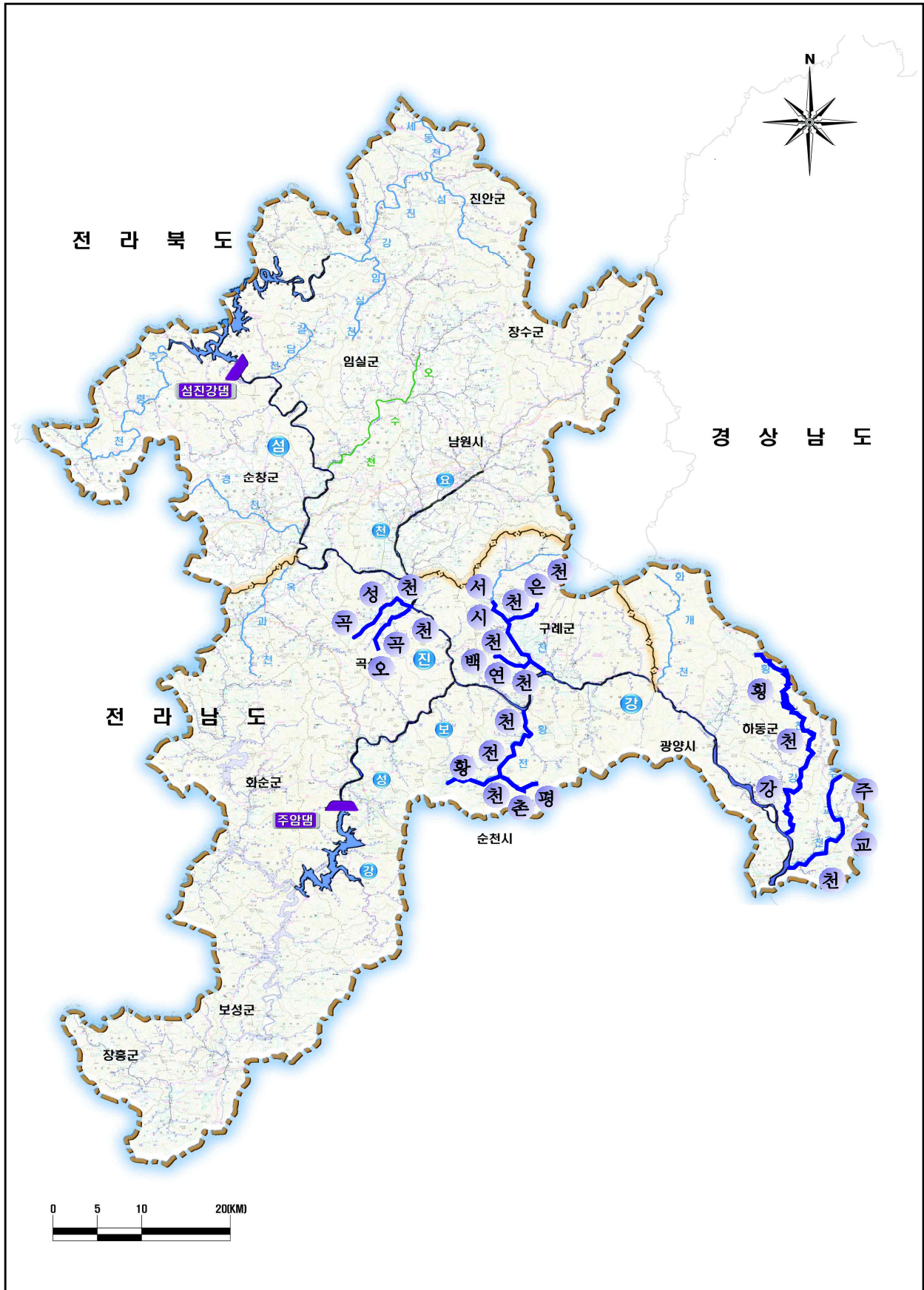
- 2019. 06. :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04. :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개최(서면심의)
- 2020.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예정)
- 2020.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예정)

1.4 계획의 내용

- 과업명 :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과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 계획수립 후 10년
- 공간적 범위

<표 1.4-1> 과업범위 및 위치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과업연장 (km)			비고
		시군	읍면	경계	시군	읍면	경계	계	기수립	미수립	
합계		9개소						100.19	95.63	4.56	
곡성천	지방	곡성	곡성	서계246번지선	곡성	오곡	섬진강(국가) 합류점	11.78	9.62	2.16	전라 남도
오곡천	지방	곡성	오곡	구성556번지선	곡성	오곡	곡성천(지방) 합류점	8.43	8.43	-	전라 남도
황전천	지방	순천	월등	신월133-4번지선 운월제방수로	순천	황전	섬진강(국가) 합류점	17.42	17.42	-	전라 남도
평촌천	지방	순천	황전	평촌548번지선	순천	황전	황전천(지방) 합류점	5.12	5.12	-	전라 남도
서시천	지방	구례	산동	위안36-4번지선	구례	구례	섬진강(국가) 합류점	10.66	10.66	-	전라 남도
천은천	지방	구례	광의	방광546-2번지선	구례	광의	서시천(지방) 합류점	4.45	3.20	1.25	전라 남도
백연천	지방	구례	구례	산성352번지선	구례	구례	서시천(지방) 합류점	2.73	1.58	1.15	전라 남도
주교천	지방	하동	양보	주교	하동	고전	섬진강(국가) 합류점	19.00	19.00	-	경상 남도
횡천강	지방	하동	청암	횡천	하동	고전	섬진강(국가) 합류점	20.60	20.60	-	경상 남도



(그림 1-1) 과업구간 위치도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관련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하천 총 9개소 하천 연장은 100.19km임.

<표 2.1-1>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관련 행정구역

구 분	행정구역	해당 소하천	비 고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천, 평촌천	
	곡성군	곡성천, 오곡천	
	구례군	서시천, 천은천, 백연천	
경상남도	하동군	주교천, 횡천강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 공사시 하천내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장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소음 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 계획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주요 검토항목과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하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계획하천

<표 2.2-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자 산 ◦하천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하천 정비시 하천지형 변화영향	◦계획하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미치는 경관변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하천 정비로 인한 계획 하천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수라수문 ◦하천 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입지의 타당성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계획 하천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 기 질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지역
		소음·진동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지역
		토 양 ◦하천 정비시 토양오염 영향	◦계획하천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하천 정비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방안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 ◦계획 하천의 토지이용 변화	◦계획하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지질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
		수환경의 보전	○ 수질,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표 3.1-2>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 부 항 목	결 정 결 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 · 식 물 상	중점평가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중점평가	○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 형 · 지 질	중점평가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위 략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중점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질(지표저질)	중점평가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이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 리 · 수 문	중점평가	○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파악
		해 양 환 경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경미

<표 3.1-2 계속>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부 항목	결정결과	사 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일반평가	○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평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토 양	일반평가	○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중점평가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평가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자원순환	중점평가	○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중점평가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변화 없음
		산업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3.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정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3.2-1>과 같으며, 항목별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

<표 3.2-1> 평가 범위 및 방법의 선정 및 사유

평 가 항 목		평가 범위 및 방법 선정		검토내용
		지역(범위)	방 법	
자연 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탐문조사포함) ○ 사업계획 분석	○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 상 현황 파악 및 변화 예측
	자연환경 자산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
	지형·지질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공사계획평면도	○ 지형·지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경 관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경관변화 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수 질	○ 계획하천 ○ 하류수계	○ 현지 및 문헌조사 ○ 수리·수문 해석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 ○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수리·수문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 상	○ 계획하천	○ 인접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 문헌조사	○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대기질	○ 주변지역		
	토양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소음·진동 예측식 -거리감쇠 공식	○ 소음·진동 현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원단위 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토지이용 현황 파악
			○ 사업계획 분석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3.3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계획

- 본 계획에 대한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는 현지조사와 기존 자료(“국가수질 측정망”)를 활용할 계획임

<표 3.3-1>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	횟수	비고
환경질 측정	지표수질	○ 현지조사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Chl-a, Cd, As, CN, Hg, Pb, Cr ⁶⁺ , ABS 등 총 19개 항목	28지점	3회	
		○ 자료활용 -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Chl-a 등 총 11개 항목	3지점	-	
	하천저질	○ 현지조사 - 입도분포, 강열감량, 유화물, T-N, T-P, COD, Cd, Cu, As, Hg, Pb, Cr, Zn, Ni 등 총 14개 항목	28지점	1회	
동·식물상 조사	육상 동식물상	○ 현지조사 - 식물상과 식생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2회	
	육수 동식물상	○ 현지조사 - 육수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2회	

- 주) 1. 자료활용(국가수질 측정망-황천강1,2,3)
2. 육상동식물상 조류는 동계 조사 포함하여 3회 시행

4.1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4.2 의견수렴 계획

4.2.1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과업인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4.2.2 평가서 초안 공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표 4.2-1>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계획(안)

구 분	공람장소(안)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라남도 곡성군, 순천시,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4개 시·군

4.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 략 ~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4.2.4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도지사(전라남도, 경상남도), 관할 시장·군수(곡성군, 순천시, 구례군, 하동군)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2.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게시할 것임.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5.1.1. 심의방법 및 심의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 구상안
 -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그 밖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내용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회 개최 : 서면심의 실시
- 협의회 구성위원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박 ○ ○	행정기관
2	위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 ○ ○	협의기관
3	위 원	순천시 생태환경과	김 ○ ○	지자체
4	위 원	곡성군 안전건설과	박 ○ ○	지자체
5	위 원	구례군 환경교통과	최 ○ ○	지자체
6	위 원	하동군 환경보호과	문 ○ ○	지자체
7	위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에너지평가실	최 ○ ○	협의기관 추천전문가
8	위 원	수성엔지니어링	최 ○ ○	행정기관 추천전문가
9	위 원	구례군 주민대표	오 ○ ○	주민대표
10	위 원	하동군 주민대표	강 ○ ○	주민대표
11	위 원	푸른곡성21	박 ○ ○	시민단체

5.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총괄)

심의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 필요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계획 수립 요망 ○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사업에 반영 요망 ○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해당 협의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해야 할 것임	○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음 ○ 사업시행시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자연 및 문화자산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사업에 반영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해당 협의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 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 요망	○ 대상지역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지리산 국립공원 등이 사업 구간과 인접함에 따라 경관·환경적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 대안에 대한 선정 사유 명확히 제시 요망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 제시 요망 ○ 하천정비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비계획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은 원형보전 필요 ○ 섬진강 침실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하천구역으로 제내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용 용도가 없을 경우 하천구역에서 제척하여 타용도(환경보전이용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기존의 양호한 지역의 생태환경은 이·치수적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요망	○ 사업시행시 범정보호구역 및 범정보호종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 사업시행 시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은 원형보전으로 반영하겠음 ○ 사업시행시 침실습지 보호구역 검토 후 특별한 사용용도가 없을 경우 하천구역에서 제척하여 타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기존의 양호한 지역의 생태환경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3. 대안 ○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환경성 등 고려하여 대상 설정하며, 그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 수립 요망 ○ 보·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준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준치 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양 요망 ○ 평가서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 및 미예측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 요망 ○ 수요공급 대안의 비교 및 평가에서 사업규모의 대안2(action)를 하천설계빈도(80년, 100년) 2개 이상 비교 검토 요망	○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보 또는 낙차공은 준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제시하고 준치 목적이 없는 경우 이를 지양하도록 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 및 미예측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사업규모의 대안 중 하천설계빈도(80년, 100년) 2개이상 비교·검토 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요망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 제시 요망 ○ 하천의 수량·수위 산정 시 유역 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 요망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 요망 ○ 하천변 육상생물 및 수생태생물의 다양성 증진의 최적 시간(계절)을 선택 조사 분석 ○ 생태계 및 수질환경 조사는 해당 하천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공간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 실시 ○ 대기질 평가 범위는 0.5km로 검토 요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하천의 수량·수위 산정 시 유역의 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도록 하겠음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생태현황 조사시 분류군별로 적정한 시기 및 위치에 맞춰 조사·분석을 실시하겠음 ○ 생태계 및 하천수질·하천퇴적물 조사시 하천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 후 하천공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대기질 평가범위를 0.5km로 검토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하천별 시·군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공람 장소 지정 및 홍보 잘할 것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 진행 요망 ○ 관계기관 의견수렴의 관할 도지사(전라북도)는 재확인 요망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공람장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음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관계기관 의견수렴의 관할 도지사는 전라남도, 경상남도임
6. 기타 ○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 수립 요망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제시하고 동 계획의 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닌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여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 제시 요망 ○ 황전천과 평촌천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협의 및 오염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함 ○ 곡성천의 경우 기 조성된 친수형 하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 수립 요망 ○ 서시천 남동쪽 하류방향에 섬진강수달서식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요망 ○ 비고 6항의 삭제된 생활소음 규제기준(개정 2019.12.31.) 적용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음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사업시행시 수질오염총량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곡성천의 경우 기 조성된 친수형 하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 사업시행시 법정보호구역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생활소음 규제기준 최신자료를 적용하겠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와 박 ○ ○

심의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	○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도록 하겠음
※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구간과 인접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적, 환경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구간과 인접한 지리산 국립공원 등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경관적, 환경적으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겠음
3. 대안 ○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며, 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의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사업은 하천별 시·군이 많이 산재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기 공람장소 지정 및 홍보를 잘 해야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공람장소 지정 및 홍보하도록 하겠음
6. 기타 사항 ○ 사업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 ○ ○

심의의견	조치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 지방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해당하천에 대하여 과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 제시 · 도면에 기수립구간 연장 및 수립시기, 계획빈도 등 작성제시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 적정성 및 필요성 제시	○ 대상지역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음 - 도면에 기수립 연장, 수립시기 및 계획빈도 등을 작성하여 과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을 제시하겠음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및 필요성을 제시 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단순 Action/ 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 개수 외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홍수방어(조절)대책 등), 하천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치수안정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설정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 및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한 대안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음 - 단순 비교가 아닌 다양한 대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계획규모를 선정하겠음 - 치수안정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현황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 관리를 위한 지구(보전(특별, 일반, 완충), 복원, 친수(거점, 근린)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도면 등)를 포함하여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함 -하천 지구지정 현황 및 계획 비교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은 구체적인 사유 제시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안 선정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점 검토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현황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 관리를 위한 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하천 지구지정 현황 및 계획 비교표를 제시하겠음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을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겠음 ○ 사업시행 시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3. 대안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하천저질은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각 분류군별로 적정한 시기(번식기·산란기·생육이 왕성한 시기 등) 및 위치에서 실시 -동·식물상 각 분류군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첨부)하여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시점, 조사구역, 조사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하천저질은 하천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에 따라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음 ○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식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과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생태현황 조사는 분류군별로 적정한 시기 및 위치에 맞춰 실시하겠음 -각 분류군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한 후 현지조사표에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시점, 조사구역, 조사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시하겠음 -법정보호종 및 주요 동물 서식처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겠음

심의의견	조치계획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산정, 계획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하천의 수량·수위 산정 시 유역의 특성에 적합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도록 하겠음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1/5,000~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 제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의 경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를 제시하겠음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이 있을 경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 별로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	○ 사업시행시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망점별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 및 홍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 및 그림·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 및 홍보를 실시하겠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 및 그림·시뮬레이션 자료등을 활용하겠음
6. 기타 사항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고 향후 해당 하천의 개발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순천시 생태환경과 김 ○ ○

심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함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자연 및 문화자산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사업에 반영하겠음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별도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정비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비계획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은 원형보전 필요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은 원형보전으로 반영하겠음
3. 대안 ○ 별도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하천변 육상생물 및 수생태생물의 다양성 증진의 최적의 시간(계절)을 선택 조사 분석	○ 생태현황 조사시 분류군별로 적정한 시기 및 위치에 맞춰 조사·분석을 실시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 의견 없음	-
6. 기타 사항 ○ 강우량 자료 등 환경영향평가 예측에 활용하는 자료 최신자료 활용	○ 강우량 자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측에 활용하는 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겠음
○ 사업지구 황전천과 평촌천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협의 및 오염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시 수질오염총량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곡성군 안전건설과 박 ○ ○

심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 ○ 보 또는 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준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 및 준치 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지양하여야 함	○ 보 또는 낙차공은 준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제시하고 준치 목적이 없는 경우 이를 지양하도록 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음
6. 기타 사항 ○ 곡성천의 경우 기 조성된 친수형 하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곡성천의 경우 기 조성된 친수형 하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 구례군 환경교통과 최 ○ ○

심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섬진곡성 및 섬진강하류권역의 총 9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치수, 환경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 ○ 평가서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 및 미예측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예상치 못한 환경의 영향 및 미예측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생태계 및 수질현황 조사는 해당 하천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공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실시	○ 생태계 및 하천수질·하천퇴적물 조사시 하천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 후 하천공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하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적극 반영	○ 계획하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6. 기타 사항 ○ 서시천 남동쪽 하류방향에 섬진강수달서식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계획수립 및 평가시 이용되는 자료는 최신자료 이용 -〈표 3.3-12〉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 지역 지정 현황 최근 기준(2009.1.1.부터 적용) 적용	○ 사업시행시 법정보호구역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계획수립 및 평가시 이용되는 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겠음

■ 하동군 환경보호과 문 ○ ○ : 의견 없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에너지평가실 최 ○ ○

심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평가준비서의 목적은 내실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준비서는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최소한의 정보(해당 계획과 지역현황을 연계 분석한 환경성 검토자료)도 제공되지 않아 내실 있는 검토가 곤란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하천 계획, 지역현황을 연계 분석한 검토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겠음
○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환경피해 종류 및 대상지역을 예상하기 곤란하므로 해당계획에 따라 하천형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계획에 따라 하천형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 ○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홍수량 산정 등 하천계획수립에 기본이 되는 주요 요소들과 하천형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구조물 계획 등에 대한 설치여부 및 규모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허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비교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하천계획수립에 기본이 되는 주요 요소, 하천형상의 변경을 유발하는 구조물 계획에 대한 재가설, 철거, 신설의 필요성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허용이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비교·검토 후 제시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
6. 기타 사항 ○ 의견 없음	-

■ 수성엔지니어링 최 ○ ○

심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항목별 의견을 검토바람	-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경관: 자연경관 심의대상의 침실습지,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관변화	○ 사업시행시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망점별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 ○ 수요공급 대안의 비교 및 평가에서 사업규모의 대안2(Action)를 하천설계빈도(80년, 100년) 2개이상 비교 검토바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사업규모의 대안 중 하천설계빈도(80년, 100년) 2개이상 비교 · 검토하겠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대기질의 평가범위는 0.5km로 검토바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대기질 평가범위를 0.5km로 검토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계기관 의견수렴의 관할 도지사(전라북도)는 재확인 바람	○ 관계기관 의견수렴의 관할 도지사는 전라남도, 경상남도임
6. 기타 사항 ○ 대기질 환경기준(2020.5.27. 시행) 적용	○ 대기질 환경기준 최신자료를 적용하겠음
○ 1.2-디클로로에탄이 포함된 토양오염대책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2020.5.27. 시행) 적용	○ 토양오염대책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최신자료를 적용하겠음
○ 비고 6항이 삭제된 생활소음 규제기준(개정 2019.12.31.) 적용	○ 생활소음 규제기준 최신자료를 적용하겠음

■ 구례군 주민대표 오 ○ ○

심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대상지역, 토지이용, 대안, 평가 항목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견 수렴시 적극적인 계획·반영 바람	○ 주민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렴의견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며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존의 양호한 지역의 생태환경은 이·치수적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바람	○ 기존의 양호한 지역의 생태환경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겠음
3. 대안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항목별로 타당한 방법을 적용하여 환경 영향을 검토해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항목별 타당한 방법을 적용하여 환경 영향을 검토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은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함	○ 대상지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은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음
6. 기타 사항 ○ 의견 없음	-

■ 하동군 주민대표 강 ○ ○ : 의견 없음

■ 푸른곡성21 박 ○ ○

심의견	조치계획
※총괄의견 ○ 원안대로 의결	-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섬진강 침실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하천구역으로 제내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용용도가 없을 경우 하천구역에서 제척하여 타용도(환경보전이용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사업시행시 침실습지 보호구역 검토 후 특별한 사용용도가 없을 경우 하천구역에서 제척하여 타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음
3. 대안 ○ 의견 없음	-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
6. 기타 사항 ○ 의견 없음	-